

의안번호	제 829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8월 25일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이옥규, 박상돈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송미애

1. 개정이유

-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
(안 제9조)
-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기재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.
(안 별지 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”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이의신청 등)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<u>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</u>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이의신청 등)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이의 신청에 따른 내용을 상위 법령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며, 별지의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